

스타워트니스센터 규정

(제정 2010. 10. 26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재학생, 교직원, 동문의 건강증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스타워트니스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3.1.>

제2조(운영원칙) ① 센터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되 본교 그리고 체육관련 학과 발전을 위한 재정 확보에 기여한다. <개정 2016.3.1.>

② 센터의 재정운용은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재학생, 교직원, 동문들의 건강체력 측정 및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<개정 2016.3.1.>
2.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<개정 2016.3.1.>
3. 지역사회에서의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<개정 2016.3.1.>
4. 관·산·학 협력기관과의 연계구축을 통한 체력/건강증진 사업
5. 비학점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인 육성 <개정 2016.3.1.>
6. 그 밖에 본교 홍보 및 수익창출에 관한 사업 <개정 2016.3.1.>

제2장 운영위원회

제4조(설치) 센터의 기본운영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타워트니스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문화융합대학 행정지원실장이 된다.

[본조개정 2015.3.1., 2016.3.1.]

제3장 관리조직

제6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인력) 센터에는 연구원, 조교 및 근로장학생 등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8조(재정) ① 센터의 재정은 각종 연구비 및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센터의 수익금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체육관련 학과에서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5.3.1., 2016.3.1.>

제9조(연구비 등 경비지급) 센터는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금, 연구비, 실험실습비, 산학현장실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3.1.>

제10조(잉여금처분) 매 회계연도 잉여금 처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제4장 이용

제11조(이용대상자) 센터의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.

1. 본교 교직원 및 직계가족
2. 재학생(졸업유예자 포함) 및 졸업생
3. 본교 입학 예정자
4. 지역사회 일반인
5. 신동아학원 소속 기관 관계자
6. 대학발전에 기여한 인사
7. 산학협력 기관 관계자
8. 시·도 체육회 소속 선수 및 관계자
9. 그 밖에 센터장의 허가를 받은 자

[본조개정 2016.3.1.]

제12조(이용 유형) 센터의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.

1. 정규수업 및 비학점교육
2.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 및 지도자 교육
3. 본교 홍보를 위한 공식 활동
4. 외부기관 및 협회에서 의뢰한 연수, 교육
5. 그 밖에 센터장이 허가한 활동

[본조개정 2015.3.1., 2016.3.1.]

제13조(시설의 개방) ① 본 센터 시설은 교육과정 운영 및 재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체력증진, 학내 공식 행사 등에 한하여 개방한다.

② 그 밖에 시설의 개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 <개정 2015.3.1.>

제14조(이용금지·정지) ① 이용자가 센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을 금지 및 정지할 수 있다.

② 그 밖의 사항들은 센터 이용 지침에 따른다.

[본조개정 2016.3.1.]

제5장 보고 및 기타

제15조(보고) 센터장은 매월 센터의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(운영세칙)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